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0
----------	-----

2011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8일 김정태 의원외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1년 2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정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제3항)
- 에너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제10조, 제11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청수)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 부칙에서 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에너지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음
- 특정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규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조례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조례개정의 시차에 따른 조례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입법방식임
-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지구 또는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 사용해야만 하는 것임

- 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부칙으로 폐지하는 것은 **다른 조례 개정의 법제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할 수 있으므로,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본 조례는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참 고 법 령】

□ 에너지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발의년월일 : 2010년 10월 31일
발 의 자 : 김정태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녹색성장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에너지 위원회의 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제3항)
- 나. 에너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제10조, 제11조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에너지법」 제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에너지 계획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에너지 기본계획)</p> <p>①~② (생략)</p> <p>③ 에너지 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확정한다. 수립된 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제8조(에너지 기본계획)</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에너지 계획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확정한다. 수립된 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제10조(에너지 위원회)</p>	<p><삭제></p>
<p>제11조(실무위원회)</p>	<p><삭제></p>